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3065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5조 제2항, 제14조, 민법 제428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3065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11. 28 선고 2002나34320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A 담당변호사 송BA 외 4인)

【피고,피상고인】 기CACA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BB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1. 28. 선고 2002나343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은행은 1998. 11. 10. 소외 김DA의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보증원금 5,000만 원, 보증기한 1999. 11. 10.까지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1998. 11. 12. 김DA과의 사이에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한도), 여신한도를 5,000만 원, 최종상환기일을 1999. 11. 10.로 한 기업운전일반자금의 한도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은 원고가 위 약정 체결일인 1998. 11. 12.부터 김DA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잔고 외에 추가로 5,000만 원까지 인출할 수 있도록 여신한도를 공여하고, 김DA은 위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예금잔고가 0원 미만인 되는 경우 0원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월 원고가 정한 결산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갚지 않은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대출금에 가산하며,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자동적으로 대출원리금(위 예금계좌의 잔고란에 음수로 표시되는 금액)의 변제에 충당되는 방법으로 대출 및 그 상황이 반복되지만, 최종상환기일까지는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는 그 후 1999. 11. 8. 위 신용보증서의 보증기한을 2000. 11. 10.로 연장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9. 11. 10. 김DA에 대한 이 사건 대출의 상환기한을 2000. 11. 10.로 연장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첨부·인용되어 있는 신용보증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는, 위 신용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관계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한도거래대출'에 있어서 그 과목이 당좌대출(대출운용의 방식이 이와 유사한 대출거래 포함)인 경우에는 신용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용보증조건에 부합하는 1개 이상의 '건별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만

성립하고, 피고는 근보증기간 내에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실행된 건별 대출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제2조), 여기서 말하는 '한도거래대출'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위하여 동일한 대출과목으로 수시로 발생·소멸하는 대출 전체를, '건별 대출'은 한도거래대출을 구성하는 개개의 대출을, '대출실행'은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금의 지급(계좌입금 포함)을 각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제1조), 채권자가 신용보증서 앞면의 기재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나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을 경우 등에는 피고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제14조), 이 경우 그 면책범위는 피고가 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하는 것으로(제15조) 규정되어 있고, 한편 피고가 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면책기준(을 제3호증)에 의하면, 위 신용보증약관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출이 실행된 경우 피고는 전액 보증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원심은, 이 사건 대출의 성격을 약관 제1조 제4호 소정의 한도거래대출로 보는 이상 원고가 김DA에게 그 예금계좌로 대출한도를 공여한 것은 한도설정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건별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건별 대출의 실행시기는 대출한도의 공여와는 별도로 공여된 대출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대출행위가 있을 때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달리 ① 한도거래대출의 경우 채무자에게 그 예금계좌로 대출한도가 공여됨으로써 채무자가 언제든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그 대출한도까지 인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순간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② 가사 대출실행시기를 구체적인 인출행위가 있을 때로 해석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예금계좌의 잔고를 초과하는 돈을 인출한 때로 볼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대출 한도가 공여된 후 채무자가 그 예금계좌에서 금액 여하를 불문하고 최초로 돈을 인출하기만 하면 그 즉시 대출실행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신용보증서 발급일로부터 76일이 되는 1999. 1. 25.에야 최초로 마이너스 상태가 된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위 약관 규정에 의하여 보증책임을 면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약관 제2조 및 제14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고, 나아가 위 약관 조항들은 그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기 어려워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규정한 의 적용이 문제될 여지도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 제3점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은, 피고가 1999. 11. 8. 위 신용보증서의 보증기한을 2000. 11. 10.로 연장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 · 피고 사이에 유효한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이상, 피고가 위 통지로서 위 신용보증관계가 처음부터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인정하였거나, 무효가 된 위 신용보증관계를 추인하여, 그에 기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용보증관계의 성립과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